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자	
갑	양도인 (대표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공동 명의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을	양수인 (대표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지분율(%)	
		주소			
	공동 명의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지분율(%)	
		주소			
거래 내용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및 차명	
		차대번호		매매일	20__년 __월 __일
		매매금액	금 _____원整	잔금지급일	20__년 __월 __일
		자동차인도일	20__년 __월 __일	주행거리	__ km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을 수령하고 채권액을 상환한 후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한다.
제3조(공과금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의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미비, 그 밖에 행정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6조(등록 지체 책임) “을”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정해진 기간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7조(할부승계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제8조(양도증명서) 이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지니고(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가 소지한다) “을”은 이 증명서를 소유권의 이전 등록 신청을 할 때(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대표자)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양도인, 대표양수인은 공동명의자의 합의에 의해 정한다.

특약사항		수입인지 「인지세법」에 따름 (뒷면 여백에 붙임)

양도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수인과 직접 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 거래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__년 __월 __일

양도인 (대표) _____ (서명 또는 인) 양수인 (대표) _____ (서명 또는 인)
양도인 공동명의자 (서명 또는 인) 양수인 공동명의자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 양도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 양수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이 차량에 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 압류·저당권 등의 등록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사항: 이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직접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자동차매매업자 포함)가 사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제79조제16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 양도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의 항목과 조항을 같은 순서로 옮긴 작성본입니다. 정부 서식 원본(HWP·PDF)은 이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매매상사를 거친 거래에는 별지 제16호서식(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을 씁니다.